

##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박병수 의원 외 8명
3. 제정이유

완도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소송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소송비용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 사.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3, 제194조의4

6. **예고기간** : 2026. 4. 3. ~ 2026. 4. 7.(5일간)

##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사운영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06, FAX: 061-550-590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전화: 061-550-5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완도군의회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노동자
  -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발언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기관방문 또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직무수행”이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수임료(수사 출석 비용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의장은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정당한 직무수행 중 폭행, 폭언 등의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은 퇴직한 의원이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와 파견·전출·퇴직한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 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를 대리할 변호사를 별도

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건
2. 음주운전 등 개인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건
3.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사건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2.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 의원(2명 이내)
2. 완도군의회 입법 또는 법률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법률 분야 전문가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신청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소송 결과 보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행정·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의 경과, 귀책 정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된 사람이 환수 금액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구비서류

### 1. 행정·민사소송

#### 가. 착수금

구분	지급 기준		구비서류
	사 건 별	착 수 금	
행정 · 민사 소송	가. 신청사건(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본안 사건	○ 1,000만원 이내	
	다. 상소심 및 환송심	○ 1,000만원 이내	
기타	- 가집행정지신청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 나.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구비서류
<p>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일부승소(100분의 50 이상)로 확정된 경우에만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p> <p>- 최종심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에 대한 지급은 하지 않는다.(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p> <p>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않는다.</p> <p>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p>	<p>- 신청서</p> <p>- 확정증명원</p> <p>-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접수증</p>

다. 그 밖의 비용

지급 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비 나. 송달료 : 실비 다. 검증비 : 실비 라. 감정비 : 실비 마. 출장여비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름 바. 그 밖의 실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가. 착수금

지급 기준	구비서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서 -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고소장, 공소장, 수사개시통보서, 판결문 등)

나. 그 밖의 비용

지급 기준	구비서류
가. 출장여비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름 나. 그 밖의 실비	- 신청서 - 영수증 등 해당서류

##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행정·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의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1)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 등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 확 약 서

소 속: 완도군의회

직위(직급):

성 명:

본인은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완도군의회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이후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일체를 즉시 완도군의회에 반납하겠습니다.
2. 동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즉시 완도군의회에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b>소송 결과 보고서</b>			
사 건 명			
사건번호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